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: 2022.10.18
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## [(간이)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	
요약정보					
	정기갱신		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	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힘찬성장주증 권모투자신탁[주식]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(시행 령) 개정사항 반영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	
	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	
나. 투자제한		- 동일종목 투자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- 동일종목 투자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 가 발행한 채권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	
10. 집합투자기구의	최근 결산일	21.35%	20.08%		

## 유리자산운용

투자위험	기준 이전 3년				
라. 이 집합투자기	간 주간수익률				
구에 적합한 투자자	변동성(연환산)				
유형					
13. 보수 및 수수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		
료에 관한 사항		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
1. 재무정보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		
2. 연도별 설정 및					
환매 현황					
3. 집합투자기구					
의 운용실적	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	
1. 집합투자업자	기준일 현재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
에 관한 사항	갱신				

<끝>.